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촌 빈집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세부기준, 특정빈집 철거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59조의7)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 중 빈집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과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및 안전상태를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함

나.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59조의8)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준농어촌의 마을(「지방자치법」 제3조제

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전체 또는 일부에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수가 20% 이상일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다만,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제1호의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지정 가능)

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 부여 대상 빈집 기준 구체화(안 제59조의 9)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다양한 사유로 개축, 용도변경 등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행정구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도로 설치 등의 경우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를 부여 가능

라. 특정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1조의2제4항)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철거’에서 위해요소 제거, 벌목 등을 포함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로 변경함.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및 철거비용과 보상비 차액의 추가 징수 등 절차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98조)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낮출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7부터 제5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64조의6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2. 제59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제59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 법 제64조의7제2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 지역의 마을(「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일 것
2. 구역 내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구역 내 총 주택 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단, 총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 기준과 관련하여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59조의9(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의 설치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61조 제목을 “특정빈집의 철거 결정 및 통지”에서 “특정빈집의 철거 결정 및 통지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철거 결정”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 결정”으로, “철거 사유”를 “조치 사유”로, “철거 기한”을 “조치 기한”으로, “철거 예정일”을 “철거를 할 경우에는 철거 예정일”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 기간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1조의2 제목을 “특정빈집의 철거보상비”에서 “특정빈집의 철거보상비 등”으로 변경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4항 후단에 따라 차액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보상비의 차액과 그 납부기간을 정하여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이행강제금) 법 제133조1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2.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9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64조의6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2. 제59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u><신 설></u>	제59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 법 제64조의7제2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준농어촌 지역의 마을(「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일 것 2. 구역 내 빈집의 수가 10호 이

<신 설>

상이거나 구역 내 총 주택 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단, 총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 기준과 관련하여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59조의9(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의 설치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결정 및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직권 철거 결정을 한 때에는 철거 사유, 자진 철거 기한 등을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신 설>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결정 및 통지 등) ① -----
-----철거 등 필요한 조치 결정-----
-----조치 사유---조치 기한-----철거를 할 경우에는 철거 예정일-----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간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1조의2(특정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제61조의2(특정빈집의 철거보상비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4항 후단에 따라 차액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보상비의 차액과 그 납부기간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8조(이행강제금) 법 제133조1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2.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연락처	(044) 201 - 1542